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음주 및 마약 등 약물 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행정처분 및 처벌 강화 》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67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제220986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음주 및 마약 등 약물 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행정처분 및 처벌 강화(안 제27조, 제28조, 제40조, 제41조)	2

I.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제220986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16.

다. 회 부 일 : 2025. 4.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하지만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하고, 약물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40조 등).

3. 검토의견

가. 음주 및 마약 등 약물 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행정 처분 및 처벌 강화(안 제27조, 제28조, 제40조, 제41조)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1. ~ 4. (생략) 5. 제2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8호----- ----- ----- ----- ----- ----- ----- -----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 ----- ----- ----- ----- ----- ----- -----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 ----- ----- 1. ~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또는 과로·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신 설> 8.·9. (생략) 제40조(벌칙) <신 설> <신 설>	7. -----술에 취한 상태----- 8.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9.·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현행	개정안
(생략)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6. (생략) 17. 제2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와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18. · 19. (생략)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③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41조(벌칙) ----- ----- -----. 1. ~ 16. (현행과 같음) <삭제> 18. · 19.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건설기계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이하 “음주조종”이라 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이하 “약물조종”이라 함)하는 경우와 관련된 행정처분 및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7조의2¹⁾는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에 관한

1)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규정으로,

제1항제1호는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함)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제2항은 고용주가 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각각 금지하고 있음.

동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28조 및 제41조에서 각각 행정처분과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8조제7호²⁾는 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1조제17호³⁾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

2.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②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또는 과로·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기계를 조종한 자와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로서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 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이하 “음주운전”이라 함)을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⁵⁾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다.

17. 제2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와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등의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이하 “약물운전”이라 함)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내용의 처벌 규정이 시행될 예정⁶⁾으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건설기계관리법」의 음주조종 및 약물조종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에 대한 벌칙】

구분			벌 칙
음주 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약물 운전	현행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년 4월 2일 시행 예정 법률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

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법률 제20864호, 2025. 4. 1. 일부개정, 2026. 4. 2. 시행예정)
제148조의2(벌칙)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음주조종 및 약물조종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의 입법례와 같이 현행법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행정처분 및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동행위들로 인한 건설사고 및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현행법에 대한 개정안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은 음주조종과 약물조종을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으로 같은 조문에 규정하고, 음주조종 및 약물조종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도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개정안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약물조종을 안 제28조제8호로 분리하여, 약물조종을 한 경우에는 음주조종과 달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⁷⁾하도록 하고 있고,

7) 개정안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벌칙과 관련해서는, 안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8)에서 ‘약물조종’을 한 자와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9)에서 ‘음주조종’을 한 자와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행정처분 및 벌칙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되, 음주조종과 약물조종을 각각 구분하여 다른 조문에 규정하고, 약물조종과 관련된 제재를 음주조종에 관련된 제재보다 강화하고 있음.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벌칙 비교】

현행	개정안	비고
-현행법 제28조제7호- ○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또는 과로·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	-안 제28조제7호- ○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	음주조종 행정처분 현행 유지

8) 개정안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9) 개정안

제4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현행	개정안	비고
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면허 취소 또는 정지(1년 이내)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면허 취소 또는 정지(1년 이내) -안 제28조제8호 신설- ○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필요적 면허 취소	약물조종 행정처분 강화
-현행법 제41조제17호- ○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인 자가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신설- ○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약물조종 벌칙의 상한을 10배로 상향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 신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술에 취한 상태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조종 벌칙의 상한을 3배로 상향

이는 마약 등 약물¹⁰⁾이 환각, 환시, 환청, 정신불안 등을 유발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고, 마약 등 약물 투여는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약물조종과 음주조종의 제재에 차이를 두려는 것으로 생각됨.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의 사용·투약·섭취·흡입에 대해 약물의 종류에 따라 처벌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¹¹⁾과

10)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③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홍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물조종은 음주조종과 달리 ‘마약 등 약물 투여’와 마약 등 약물 투여 후 ‘건설기계조종’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서로 경합하는 구조로서, 그 처벌에 「건설기계관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이 함께 적용¹²⁾되는 점 등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제재 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음주나 마약 투여 상태에서의 조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고용주는 현행법 제43조¹³⁾의 양벌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벌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12)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13)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의 처
02)6788-5591